

항만운송 관련 주요 질의·회신

#. 통선으로 방파제공사 바지선과 육지간의 연락 중계 가능 여부

질 의 요 지	회 신 내 용
('12. 7. 26, 춘천지검)	('12. 8. 3, 항만운영과-2498)
(12. 7. 26, 순선시검) ○ 「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」제2조제1호 가목 "통 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 위" 중 본선의 범위에 항만 내에서 방과제공 사를 위한 바지선도 포함되는지 여부	(12. 8. 3, 양만운영과-2498) ○ 「항만운송사업법」에 따른 항만용역업의 사업내용에는 선박이 「항만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별표1에 의한 무역항만(노화도항 포함) 등을입출항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"통선으로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행위"가 포함되며,이는 일반적으로 입출항 선박이 부두시설에 접안하지 못하여해상에 정박중인 상황에서 선원 및 문서 등을 운반하는사업을 말하는 것임 ○ 따라서, 질의 내용과 같이 항만내에서 방과제공사를 위해 사용되는 바지선의 경우에는 본선에 해당되지 않음